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부기준

o 제 정 : '88. 8.2 (총무제1079호) o 1차 개정 : '89. 2. 25 o 2차 개정: '89. 7.5 (총무제807호) o 3차 개정 : '89. 11. 24 (총무제1279호) o 4차 개정 : '91. 3. 11 (총무제233호) o 5차 개정 : '92. 12. 28 (총무제1289호) o 6차 개정: '93. 11. 18 (총무제1223호) o 7차 개정: '94. 6.30 (총무제666호) o 8차 개정 : '96. 3.5 (총무제262호) o 9차 개정 : '97. 2.1 (총무제115호) o 10차 개정 : '98. 6. 18 (총무제664호) o 11차 개정 : '99. 6.24 o 12차 개정 : '00. 12. 26 (총무제980호) o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: '02. 12. 20 개정: '03. 4. 8 개정: '07. 1. 2

개정: '07. 8. 1 개정: '09. 12. 31 개정: '11. 2. 25 개정: '14. 5. 1 개정: '16. 9. 1 개정: '20. 6. 1 개정: '21. 10. 1 개정: '22. 1. 28

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이 공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는데 필요한 사무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"무주택 근로자"라 함은 현 주민등록표상 본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말한다)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- 2. "1주택 근로자"라 함은 현 주민등록표상 본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말한다) 전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.
- 3. "주택자금"이라 함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을 말한다.
- 4. "주택구입자금"이라 함은 주택구입 및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
- 5. "주택임차자금"이라 함은 주택전세금을 말한다.
- 제3조 (대부대상) ① 주택자금은 근속년수 1년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한다.
 - 1.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신청하는 경우
 - 2. 1주택 근로자가 기소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주택임차자금을 신청하는 경우
 - ② 사내부부 근로자는 동일한 주택계약건으로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.
- **제4조 (대부한도액 및 대부기간)** ① 대부금액은 실소요액으로 하되, 주택구입자금, 주택임차자금은 7,000만원 이하로 한다.
 - ② 주택구입자금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'은행업감독규정'에 따라 '주택담보대출비율(LTV)'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대부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10년, 15년 선택 균등분할 상환하며, 거치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급여 지급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급여에서 공제한다.
- 제4조의2 (대부금의 중도상환) ① 주택자금 대부 직원은 잔액을 일시 상환하거나, 1,000만원 단위로 일부상환 할 수 있다. 다만 대부금 잔액이 1,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전액을 상환한다.
 - ② 일시 및 일부상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급여 지급일에 하여야 한다.
- 제5조 (대부대상 주택규모) 대부대상 주택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(85㎡) 이하로 한다.
- 제6조 (대부신청 절차) 주택자금 대부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주택자금은 주택매매계약 (분양계약, 건축허가, 주택조합 설립인가) 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한다.
 - 2. 주택자금 신청일은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.
 - 3. 주택자금 신청 및 계약은 본인 명의(공동명의 가능)로 하여야 하며 근무부서 실·국장·지사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 - 4. 기금은 필요시 대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의2 (대부신청 서류) 주택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부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
 - 1. 주택 구입자금 대부신청 서류 목록 (별지 1호)

- 2. 주택 임차자금 대부신청 서류 목록 (별지 2호)
- 3. 주택자금 대출계약서 (별지 3호) [본조 신설 2022. 1. 28]
- 4. 무주택(1주택) 사실 증명원 (별지 4호)
- 5. 채무상환 이행각서 (별지 5호) <개정 2022. 1. 28>
- 제7조 (대부실행) ① 제3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대부 신청한 경우 기금의 공동 대표이사가 검토하여 대부를 실행하며,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- ② 주택자금 대부금은 매분기 중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조정지급 가능하다.
- 제8조 (적용금리) ① 주택자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'은행가계대출 금리(분기별로 연동)'를 적용하며, 연체이자율은 연15%를 적용한다.
 - ② 금리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분 발표 후 익월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.
- 제9조 (기간계산) 대부원금 상환연체이자의 일할액은 연액의 365분의 1로 계산한다. 단,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.
- 제10조 (채무보증) ①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 - ② 분양권 당첨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, 이행 확약서(별지 제6호)를 제출하고,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 - ③ 주택임차자금은 대부확정 후 대부금 지급 전까지,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(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) 제1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연금 담보 설정액이 대부금에 미달 시 보증보험증권을 부보 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의 경우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능하며, 대부 후 확정기여형(DC형)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]
- 제11조 (대부금 회수)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되 2호의 경우에는 최초대부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금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

- 1.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면직된 경우
- 2.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이 아닌 자가 대부받은 경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
- 3.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4.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 설정을 기피하거나, 기타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2조 (재대부) ① 주택임차자금은 재계약에 따라 제4조 1항에서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추가대부 할 수 있다.
 - ② 주택임차자금 대부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주택구입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추가로 대부받을 수 있다.
 - ③ 추가대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추가신청금을 포함한 대부금 전액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하여야 하며, 추가대부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최초 대부시점부터 기산한다.
 - ④ 기 대부수혜자가 대부잔액을 전액상환 후 재대부 신청시에는 대부할 수 있다. 단, 2년 거치 기간은 인정이 안되며 대부시점 익월 급여에서 원금을 공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사후관리) ① 기금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
 - 1. 주택매입시 (주택조합 또는 공동주택의 최초분양 매입시 포함)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즉시
 - 2. 주택신축 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즉시
 - ③ 주택임차자금은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및 잔금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통보의무) 주택자금으로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당하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 (비용부담) 주택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 대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다.

- 제16조 (용어해석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해석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대로 따른다.
- 제17조 (대부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부심의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 단, 융자액 한도 및 적용금리의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 - ② 대부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2인과 대표이사 2인이 각 2인씩 지명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한다.
 - ③ 대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기금공동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18조 (질권실행 협조) ① 제10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부한 경우 공사가 갖는 질권의 권한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대부액에 대한 질권 실행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]

부 칙

- **1. 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02년 12월 20일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이전 공사의 주택자금 융자기준에 의한 주택융자금은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3년 4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7년 1월 2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	(시행일)	이	기준은	200	07년	8월 1일	시행학	한다.				
					ĵ	부		칙				
1.	(시행일)	이	기준은	- 200)9년	12월 31	일 시호	탱한다.				
					j	부		칙				
1.	(시행일)	이	기준은	201	11년	2월 25일	<u></u> 시행	한다.				
					ĵ	부		칙				
1.	(시행일)	이	기준은	2- 201	14년	5월 1일	시행학	한다.				
					ĵ	부		칙				
1.	(시행일)	이	기준은	2- 201	16년	9월 1일	시행학	한다.				
						부		칙				
	(시행일) (경과 조 치		·					-	아는	종전	기준에	따른다.
						부		칙				
	(시행일) (경과조 ^ス									종전	기준에	따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종전 기준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부한 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.

주택구입자금 대부신청 서류 목록

구분	서류	비고
	· 주택자금 대부신청서	복지카페 신청 후 출력
	· 주택자금 대출계약서	(별지 3호) 제출
	· 주택매매 계약서(분양계약서, 건축 허가서, 입지심의필 서류) 등	
공통	· 주민등록등본	부양가족 확인용
	· 채무상환 이행각서	(별지 5호) 제출
	·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(구입물건)	등기 후 제출 가능
	· 무주택자 확인서(은행 발급)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(본인, 배우자)	배우자 외 부양가족 있을 시 무주택(1주택) 사실 증명원 (별지 4호) 제출
분양권 대출자	· 이행 확약서	(별지 6호) 제출

주택임차자금 대부신청 서류 목록

구분	서류	비고
	· 주택자금 대부신청서	복지카페 신청 후 출력
	· 대출계약서	(별지 3호) 제출
	· 임대차 계약서	
	· 주민등록등본	
공통	· 채무상환 이행각서	(별지 5호) 제출
	· 보증보험증권	대부담당자 대행
	· 퇴직연금 질권설정 승낙 신청서	퇴직연금 담보설정 시
	· 임차한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	사후제출
	· 잔금납부 영수증	사후제출
	· 무주택자 확인서(은행 발급)	
무주택자 (택 1)	·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(본인, 배우자)	배우자 외 부양가족 있을 시 무주택(1주택)사실증명원 (별지 4호) 제출
1万FHTL	·(보유주택) 주택 매매 계약서	
1주택자	· 무주택(1주택)사실 증명원 제출	(별지 4호) 제출

주택자금 대출계약서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"갑"이라 한다)은 _	
(이하 "을"이라 한다)와 다음과 같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.	

제 1 조【대출 목적】

- ① "을"은 다음의 필요(v체크)에 의하여 "갑"에게 대출을 요청한다.
 - □ 무주택자인 "을"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
 - □ 무주택자인 "을"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
 - □ 1주택자인 "을"이 기소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
- ② "갑"은 대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"을"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을"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2 조 [대출액 및 이자]

- ① "갑"은 "을"이 필요한 대출액 일금 _____원정 (₩____) 을 대출하기로 한다.
-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라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한 경우 대출 기간의 만료일은 퇴사일로 한다.
- ③ 제1항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은행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며, 연체이자율은 연 15%를 적용한다.

제 3 조【채무보증】

- ① "을"은 주택구입자금 채무보증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- ② "을"은 주택임차자금 채무보증을 위하여 "갑"의 대부기준 제10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하여야 한 다.
- ③ "을"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"갑"을 대신하여 "을"이 가입한 퇴직연금 의 질권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4 조 [준용]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대부기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5조【관할법원】

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 (갑) 주 소 :
 (을) 주 소 :

 회사명:
 생년월일 :

 대표자:
 (인) 성명:

 연락처:
 연락처:

무주택(1주택) 사실 증명원

소	속 :	직	위 :
성	명 :		

- 1. 본인은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외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양가족도 무주택(1주택)자 임을 확약합니다.
- 2. 본인은 제2조(용어의 정의), 제3조(대부대상), 제11조(대부금 회수)를 확인하였으며, 상기 규정에 반하여 대부를 받았을 경우, 제11조에 따라 주택자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
20 . . .

증 명 인 : (인)

채무상환 이행각서

소	속 :	직	위 :
성	명 :		

- 1. 본인은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「주택자금 대부기준」을 준수하고 대부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의 조치 및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은 제11조(대부금 회수)를 확인하였으며, 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자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.
- 3. 본인은 대부금 회수 및 반환사유 발생 시 급여 및 퇴직급여에서 미변제액을 임의 상계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4. 대부금 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이외의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, 소송관할은 기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겠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

각 서 인 : (인)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 귀하

이행 확약서

소	속 :	직	위 :
성	명:		

분양권 소재지:

본인은 상기 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아 래 -

- 1. 본인은 추후 시중은행 대출 시, 기존 주택자금 대부금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의 '은행업 감독규정'에 따라 '주택담보대출비율(LTV)'을 적용한 대출규제를 받겠습니다.
- 2. 본인은 주택자금 대부기준 제4조에 따라 선순위 채권액(금융기관 설정 예정액 포함)과 주택자금의 합계금액이 금융위원회 '은행업 감독규정'의 '주택담보대출비율 (LTV)' 적용 한도를 초과할 시 주택자금에 대한 초과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- 3. 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내대출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습니다.

20 . . .

확 약 인 : (인)